

의안번호	2212261
의 퇴 인	이소영의원
회 답 일	2025.10.24.
추계번호	25B45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 8,200만원(연평균 1억 1,6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탄소예산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함.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봄(제2항)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035년: 100분의 61 이상 2040년: 100분의 80 이상 2045년: 100분의 90 이상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함(제3항)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신설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신설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제1항)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함(제2항)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국제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함.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봄(제4항)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함(제5항) 1.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서 작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4	안 제30조의2(석탄화력발전의 종료) 신설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석탄화력발전소”라 한다)을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2	안 제8조의2 (탄소예산 산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22조의2 (기후과학위원회)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경우 위원 보수 또는 수당 지급, 회의 운영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사무처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서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 현시점에서 기후과학위원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의 구성, 업무추진계획, 사무처 조직 및 정원 등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4	안 제30조의2(석탄화력발전의 종료) 신설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별도의 의결 전제 법률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2025년 10월 현재 기준 14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수반되는 재정소요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안을 통하여 검토하므로 중복하여 재정소요를 추산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국가 탄소예산¹⁾을 산출할 경우,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예산 산출은 고도의 분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본 추계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서는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 산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종전의 환경부가 발주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2021년, 1억 6,000만원),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평가”(2023년, 3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전략 마련”(2023년, 1억 2,250만원)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1억 9,400만원으로 가정함
 - 국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6년부터 2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5억 8,200만원이 발생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탄소예산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